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80759
	최초 등록일	2018.08.03.
	최종 등록일	2025.03.06.

토스트카페마리

정보공개서

[쥬더블유엔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번 호	1 8 9 9 - 2 4 5 0	팩 스 번 호	0 2 - 8 2 6 - 2 2 2 5
가 맹 사 업 부 서	본 부	담 당 부 서 전 화	1 8 9 9 - 2 4 5 0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87, 3층(풍납동)		
홈 페이지	www.maritoast.com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 가맹사업 (㈜더블유엔씨 “토스트카페마리”)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토스트카페마리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더블유엔씨	토스트카페마리 외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87, 3 층(풍납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2019.04.10	2019.04.10	노정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110111-7072848	207-86-01389	1899-2450

2. 최근 3년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구 분	명 칭 (이 름)	상 호	주 소		
특 수 관 계 인 (임 원)	노 정 현	(주) 더 블 유 엔 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87, 3 층(풍납동)		
		영 업 표 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토 스톡페마리 외 3 개	노정현	1899-2450	02-826-2225

3. 최근 3년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전부(일체)를 인수함	(주)와이낫	지지고, 월남국수, 마리, 철판요리포 차판	2019.04.19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92, 3층(상도동)	정호열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토스트카페마리]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토스트카페마리	
상호	토스트카페마리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출원번호 : 4020190197093
그 밖의 영업표지		출원준비중

5. 가맹본부의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 근거자료는 [별첨 1] 참조

(단위:천원/VAT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242,698	250,576	-7,878	1,888,564	189,244	196,644
2022 년	246,441	299,625	-53,184	1,630,547	-79,330	-45,306
2023 년	165,012	292,511	-127,498	1,177,678	-84,371	-74,313

나. 당사의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성명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노정현	대표	2019.04~현재	(주)더블유엔씨 대표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12

8. 최근 3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당해 브랜드 포함)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더블유 엔씨	가맹사업 경영	2019.4.~ 현재	지지고(등록번호: 20110100362)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2019.4.~ 현재	월남국수(등록번호: 20170410)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국식사업
			2019.4..~ 현재	토스트카페마리(등록번호: 20180759) 이라는 영업표지의 제과제빵사업
			2023.2.~ 현재	까만떡볶이 감떡(등록번호: 20230308) 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2018.09~2020년 (등록취소 2020년)	철판포차(등록번호: 20140831)이라는 영업표지의 주점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 내용	등록 여부 (일자)	등록 번호	소유자	존속기간만료일
MARIROLL 마리롤	간판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홍보활동 (제43류)	등록 2019.03.04.	4014532100000	정호열	2029.03.04
		등록 2019.03.04.	4014532090000	정호열	2029.03.04
토스트카페마리		등록 2021.08.06	4017483680000	주식회사 더블유 엔씨	2031.08.06

- ☞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의 상표 등이 현재 출원 중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충북	1	1	-	3	3	-	3	3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4	4	-	6	6	-	4	4	-
경남	1	1	-	1	1	-	-	-	-
제주	-	-	-	1	1	-	1	1	-

5.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토스트카페마리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9	25	-	3	3	31
2022 년	31	11	-	10	2	32
2023 년	32	4	8	4	-	24

6. 최근 3 년 마리 외 당사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해당 브랜드 포함)

(단위:개)

구분	상호/이름	업종	영업 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점 및 직영점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더블유엔씨	분식	지지고	20110100362	65/-	62/-	60/-
가맹본부	(주)더블유엔씨	제과제빵	토스트 카페마리	20180759	31/-	32/-	24/-
가맹본부	(주)더블유엔씨	기타 외국식	월남국수	20170410	5/-	4/-	3/-
가맹본부	(주)더블유엔씨	분식	까만떡볶이 깜떡	20230308	-	-	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연간 매출액(단위: 천원,VAT 미포함)						산출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평균매출액	3.3m2당	상한	3.3m2당	하한	3.3m2당	
전체	24	108,714	10,933	187,373	18,745	52,680	2,471	23
서울	2							5곳미만
인천	5	103,539	10,565	133,167	15,667	57,620	6,402	5
부산	-	-	-	-	-	-	-	-
대구	2							5곳미만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6	135,524	15,086	187,373	18,301	76,584	10,211	6
강원	-	-	-	-	-	-	-	-
충북	3							5곳미만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1							5곳미만
경북	4							5곳미만
경남	-							
제주	1							5곳미만

[가맹점의 매출액은 POS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영업개월수가 6개월 미만인 가맹점 1개점을 제외하고 실제 23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 표의 매출액은 실제 매장의 매출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가맹점사업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4	66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해당없음

10. 광고·판촉비 지출 내역

당사의 2023 년 광고 및 판촉비는 아래와 같으며, [토스트카페마리 외 3]의 가맹사업에 관하여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88,336	88,336	-	
광고/판촉	온라인광고 로컬캠페인	연중	88,336	88,336	-	손익계산서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합계

11. 가맹금 예치 기관

예치기관명	지점명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송실대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1	02-817-9101

(국민은행)

항 목		내 용	비고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금 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www.kbstar.com) 접속 → ③ (기업서비스)클릭 → ④ (SOHO센터)클릭 → ⑤ (가맹금예치제도)클릭 → ⑥ (가맹점사업자)클릭 → ⑦ (가맹금예치금 예치)클릭 → ⑧ 가맹금예치 완료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 계약자	(주)더블유엔씨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토스트카페마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대가 2. 영업표지 사용 부여의 대가 3. 노하우제공의 대가 4. 개업지원의 대가 5. 기타 자료제공의 대가	5,5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 하여 소요되는 소 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3,3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 되는 소멸성 비용

나. 보증금

구분	내역	금액 (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1,000,000 (vat 없음)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가맹비	5,500,000
교육비	3,300,000
보증금	1,000,000
합계	9,800,000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내역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내용

(33 m² 기준/단위:원/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 ² 당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협력업체	20,900,000	2,090,000	개별계약	발주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간판	"	5,500,000	5,500,000	"	"
설비/집기	협력업체 외 2 곳	20,900,000	2,090,000	"	"
메뉴보드/음향 기기	협력업체 외 1	3,300,000	3,300,000	"	"
포스/키오스크	협력업체 외 1 곳	4,950,000	495,000		
기타품목	가맹본부 외 1곳	1,100,000	1,100,000	"	"
합계	-	56,650,000	14,575,000	-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제공, 도면제공, 관리감독, 감사의 대가로 **3.3m² 당 330,000(VAT 포함)**을 위 비용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표의 3.3m² 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기준하여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이며, 실제로는 면적에 비례하지 않거나 면적에 상관없이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목당 비용이 매장 면적과는 상관이 없고 간판의 경우에는 외부 건물의 형태와 상태 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 사인물의 종류, 수량, 질 등이 좌우하므로 면적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별도비용: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인테리어,외장공사 실측 후 추가 m² 당 금액 별도

마.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	-----------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4)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	---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관계 법령 준수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귀하의 가맹금 납부 절차

귀하는 계약 체결 시에 가맹금을 일시에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영업을 시작한 이 후 비용의 부담

구 분	내 역	지급 상대방	금 액(단위:원 /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 본부	매월 220,000원	매월 5일	후불로 반환 안됨

교육비	수시 교육	가맹 본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보수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개별 청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V. 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개별 청구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V. 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개별 청구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POS 사용료	전산시스템 사용료	지정 업체	업체와 개별 계약	개별 청구	후불로 반환 안됨
점포환 경개선 비용	간판 및 인테리어 시공 비용	계약자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외 나머지 모두	개별 청구	발주 전 소요 비용 공제 후 반환
지연 이자	비용의 지급 지체에 따른 이자	가맹 본부	연 20%	개별 청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여서 반환 안됨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수시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구분	금액 (단위:원/VAT 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갱신비	1,100,000	계약 갱신일 10 일 이전	갱신 시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	

※ 다만, 재가맹비는 최초 즉, 1차 재계약 시에만 부담하며, 2차 재계약 이후로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비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 34조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비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 제 10조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비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반환되는 가맹금의 범위는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서 제 16조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양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양수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2,750,000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 하여 소요되는 소 멸성 비용

교육비	양수 전 교육비	3,3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계약이행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1,000,000 (vat 없음)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1)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 종료 후의 조치	관련 계약조항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日) 당 금오십만원(₩5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18조 제3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부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제5항

2)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가 토스트카페마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권장/강제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품목 중 권유 품목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되는 경우 구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추가·변경·삭제·제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표상의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에 관한 기재는 전체적으로 가맹본부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체제조”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만, 개별적 품목의 경우에는 어떤 때는 어떤 품목의 수취여부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점에서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수취함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

·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2023년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토스트카페마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표상의 경제적대가는 브랜드별 구분 불가하여 2023년 운영한 브랜드를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상품·용역명	[별첨 3]
제한내용 및 조건	상기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의 상품·용역을 제공은 당사의 승인없이 취급할 수 없음
위반시 책임	● 1회 위반: 구두 경고 ● 2회 위반: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 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비고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당사는 토스트카페마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 별로 기재된 상품·용역은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 ●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별첨 3]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3]	[별첨 3]	변경 시 서면 또는 홈페이지 등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가맹본부
토스트 전문점	토스트카페마리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브랜드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설정기준	설정방법
------	------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300m 을 원칙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

다.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얻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영업지역 밖에 고객에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관련 계약조항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서 제12조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계약서 제12조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계약서 제12조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일반소매점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급에 관하 사항은 없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가맹점만)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당사는 해당 영업표지 직영점이 없어서 모든 판매상품이 가맹점 전용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토스트카페마리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갱신시에는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갱신시 계약기간 [1]년)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항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 ·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사유 및 절차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항
가맹점사업자가 원 · 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37조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 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 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3 조 제 5 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개량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공급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상기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즉시 해지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 37 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행,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업무위탁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업무위탁 절차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상속,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경업금지 되는 업종

당사의 토스트카페마리 브랜드와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토스트카페마리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오전 08:00 ~오후 20:00	월 26일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 /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납입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0%	광고비의30% / 가맹점사업자수	
	가맹점모집광고	100%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관련 계약조항
⑤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 제24조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25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영업비밀 보호	관련 계약조항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계약서 제2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 제39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계약서 제39조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관련 계약조항
⑥개점 전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 변심에 의하여 해지·중단·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제14조

사업자는 계약금으로 교부된 금액에 대하여 포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실비로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전 항의 요구 품목 또는 의뢰한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을 시에는 공급받았더라면 지불하였을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⑤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일방적 해지·중단·종료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지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일금 삼십만원 (₩3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제37조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1일(日)당 금오십만원 (₩5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④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2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3항(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
① 당해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규정 이외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합계		25~35 일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2-1899-2450),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 체결 14 일 전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1 일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2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3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15~25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3 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5 일	
오픈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픈닝 행사(담당자 판단)	D-day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분쟁의 해결	관련 계약조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서 제42조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 방법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까지	필수 교육
수시교육	가맹점의 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가맹점운영 사항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보수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등	실습교육 개별 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신규 교육	5일	3,300,0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필요시 실시
보수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종업원입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 유	불이익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서 제37조제1항제5호)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갱신 거절 (가맹계약서 제36조제1항제6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개시 승인 거부 (가맹계약서 제14조 제2항)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끝-

[별첨 1]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가맹점의 초도물품/원·부재료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공급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도 영업표지가 삽입된 경우에는 강제함.

[별첨 3] 권장가격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상기와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확인서1: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설명듣고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2: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충분히 설명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창업 예정지 인근 10개 매장의 현황을 충분히 설명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4: 비밀 유지 약속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며,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귀사에게 수령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제 공 일 자 :	
수 령 장 소 :	
수 령 자 주 소 :	
전 화 번 호 :	010-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가 맹 본 부 :	주식회사 더블유엔씨 대표이사 (인)
※ 가맹본부란을 제외한 이외의 기재 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